

전주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23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전휴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재억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금태

변론 종결 2020. 11. 25.

판결 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5,506,848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5. 28.경 피고 B에게 6억 원을 이자는 2015. 7. 30.부터 매 2개월마다 13,808,000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179,504,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변제기는 2017. 9. 30., 연체이율은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위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고, 위 피고로부터 2017. 12. 28.에 10,000,000원, 2018. 1. 16.에 2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위 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비용, 이자(지연손해금은 여기에 포함된다), 원본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1) 위 변제금 10,000,000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변제당일인 2017. 12. 28.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 29,260,273원[= 600,000,000원 × 연 20% × (89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10,000,000원에 충당되고, (2) 위 변제금 200,000,000원은 위 지연손해금 잔액 19,260,273원(=

29,260,273원-10,000,000원)과 종전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변제당일인 2018. 1. 16.까지의 지연손해금6,246,575원[= 600,000,000 × 연 20% × (19일 ÷ 365일)] 합계 25,506,848원에 먼저충당되고, 그 나머지 174,493,152원(= 200,000,000원 - 25,506,848원)이 원본에 충당되어, 위 차용금 채무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위 피고는 위 200,000,000원을 변제할 당시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피고의 주장대로 변제자인 위 피고가 위 돈을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비용, 이자, 원본의 변제충당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425,506,848원(= 600,000,000원 -174,493,152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8, 11, 12, 13호증,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이하 이 항목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은 2016. 12. 1. 배우자인 피고 C(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달 15일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재산

항목		가액(원)
이 사건 부동산		520,000,000
충북 영동군 F 입야 15868㎡		11,218,676
전북 고창군 G 답 1408㎡		9,799,680
제주시 H 대 4,182㎡ 및 그 지상 건물(단독주택)		329,085,000
남원시 I	J 전 1117㎡	32,951,500
	K 잡종지 397㎡	136,700,200
	L 대 219㎡	19,929,000
M에 대한 채권		100,000,000
주식회사 N에 대한 채권(연대보증인 O, P)		100,000,000
합계		1,259,684,056

ㄴ 소극재산

항목	금액(원)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570,016,153
주식회사 Q에 대한 대출금채무	288,000,000
R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924,000,000
원고에 대한 채무	600,000,000
합계	5,482,016,153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피고 B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부

가) B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6. 12. 1.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S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그 감정평가액만으로도 2012. 6. 19. 기준으로 5,306,823,000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한회사 S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을 곧바로 그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B이 유한회사 S의 사실상 1인주주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907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B이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있는 회사가 당시 시가 합계 약 53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회사가 건설한 업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인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와 부부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일을 아내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B이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있는 회사가 당시 시가 합계약 53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회사가 건설한 업체였던 점,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를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는 추정을 복멸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원상회복 범위를 한도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5. 1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인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 2017. 1. 2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가 2018.10. 30. T조합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 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 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및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억 2,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2억 8,800만 원임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5억2,000만 원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2억 8,8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억 3,2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금만 6억 원이어서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공동담보가액인 2억 3,200만 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억 3,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억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가액배상 지급의무 발생일인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 현, 판사 남궁주현, 판사 곽 지 영